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8. 24.

황운하 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8. 2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39회 국회(정기회)

- 제2차 정무위원회 (2026. 9. 1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황운하의원)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곽 현 준)

□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주체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이라 함)을 추가하려는 것임.

○ 황운하의원안은 요청 주체에서 '검찰총장'[1]을 삭제하고 있으나, 박상혁의원안은 '검찰총장'을 존치하고 있음(안 제13조의3).

현 행	황운하의원안	박상혁의원안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르면,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

1) 「공소청법」 제6조(공소청의 장 등) ①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
②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제1항[2]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받은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음.

□ 한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검사의 조직·직무에 관한 사항은 「공소청법」으로, 중대범죄 수사기능에 관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함)」로 이관·신설되었으며, 해당 법률들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중수청법」 제4조제1호[3]는 중수청의 직무로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

---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연결되어 있는 착신회선의 전기통신번호를 포함한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3.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중대범죄수사청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호다목[4]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5]에 규정된 범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수사기관인 중수청의 직무 범위에 해당 범죄가 포함되는 이상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주체에 중수청장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 다만,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 요청 주체에 「공소청법」 제6조제1항의 검찰총장을 존치할 것인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공소청법」 제4조[6]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를 고려할 때, 중대범죄 수사기능의 중수청 이관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

---

1.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
2. 법률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및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된 범죄, 「형법」 제114조의 범죄

5)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법률 제21503호 개정에 따라 동 법의 규율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되면서 제명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반영한 것임.

6) 「공소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
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4.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5. 재판 집행 지휘·감독
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다고 보임.

- 「공소청법」 제4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는 과정(제2호)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과정(제3호)에서 검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국경을 초월하여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성상 범죄수익의 환수, 국제형사사법 공조(제7호)를 위한 검사의 관여도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7]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가 이미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은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2026년 12월 31일경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수사권한이 중수청 및 경찰로 이관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수청장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

7) **「공소청법 부칙」**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공소청 또한 공소유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별도로 입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검찰총장의 이용중지 요청 권한도 현행과 같이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참고로, 2026년 10월 1일부터 법률 제21503호[8]에 따라 동 법의 제명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안 부칙의 시행일(10월 2일)에는 변경된 제명이 적용될 예정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없 음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8) 다만, 법률 제21503호에서 제13조의3은 개정하고 있지 아니함.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